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2938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연월일 : 2025년 12월 18일
제 안 자 : 교육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안 제12조의2제1항의 “법” 및 같은 조 제2항의 “법 시행령” 이 지칭하는 법령이 모호하므로, 명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법령명을 풀어서 기재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“법” 을 “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”로 수정함(안 제12조의2제1항).
- “법 시행령” 을 “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로 수정함(안 제12조의2제2항).

3. 참고사항 : 없음.

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 한다.

안 제12조의2제1항 중 “법” 을 “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법 시행령” 을 “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”으로 한다.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〈신 설〉	<p>제12조의2(학교안전공제 <u>사업의 안내) ① 교육</u> <u>기관의 장은 학교안전</u> <u>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</u> <u>에게 법 제41조에 따른</u> <u>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</u> <u>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</u> <u>학교안전공제 사업에</u> <u>대하여 안내하여야 하</u> <u>며, 피공제자가 학생으</u> <u>로서 미성년자인 경우</u> <u>보호자등에게도 그 사</u> <u>업을 안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안내 <u>의 방법 및 내용 등에</u> <u>필요한 세부사항은 법</u> <u>시행령에서 정하는 바</u> <u>에 따른다.</u></p>	<p>제12조의2(학교안전공제 <u>사업의 안내) ① 교육</u> <u>기관의 장은 학교안전</u> <u>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</u> <u>에게 「학교안전사고</u> <u>예방 및 보상에 관한</u> <u>법률」 제41조에 따른 <u>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</u> <u>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</u> <u>학교안전공제 사업에</u> <u>대하여 안내하여야 하</u> <u>며, 피공제자가 학생으</u> <u>로서 미성년자인 경우</u> <u>보호자등에게도 그 사</u> <u>업을 안내하여야 한다.</u></u></p> <p>② 제1항에 따른 안내 <u>의 방법 및 내용 등에</u> <u>필요한 세부사항은</u> <u>「학교안전사고 예방</u> <u>및 보상에 관한 법률</u> <u>시행령」에서 정하는 <u>바에 따른다.</u></u></p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안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2(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) ① 교육기관의 장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,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 등에게도 그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「학교안전 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p><u>제12조의2(학교안전공제 사업의 안내)</u></p> <p><u>① 교육기관의 장은 학교안전사고 발생 시 피공제자에게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」 제41조에 따른 공제급여의 청구 및 지급 등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안전공제 사업에 대하여 안내하여야 하며, 피공제자가 학생으로서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자등에게도 그 사업을 안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안내의 방법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「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</u></p>